



4. 한국거래소 규정

- 가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- 나.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- 다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

- 라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
- 마.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
- 바.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

4. 한국거래소 규정*

가.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¹⁾ (2016/3/25 개정, 2016/3/28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☐ 주식시장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자제도를 도입하고, 유동성이 극도로 부진한 종목에 대하여 정규시장 단일가매매를 적용하고자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

2) 주요 내용

가) 저유동성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자제도 도입

- ☐ 시장조성대상종목 선정 및 배제기준 등 (제31조의14 및 별표 2의2)

— 시장조성자 적용대상이 되는 저유동성종목 선정을 위한 유동성 평가방법 및 선정·배제기준 마련

- 유동성 평가방법

- ① 평가대상종목 : 주권 및 DR
- ② 평가대상기간(전년도 10월~해당연도 9월까지), 적용기간(다음해 1년간)

- 선정·배제기준

- ① 선정기준 : 일평균거래량(5만주 미만 또는 하위 50%), 유효스프레드(3tick 초과 또는 하위 50%), 체결주기(10분 이내)

* 해당 내용은 한국거래소에서 공지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됨

1) 제41조의2, 제56조의3 및 별표 2의2 제3호의 개정규정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

② 배제기준

배제기준	세부내용
기타 증권그룹	상장규정상 보통주식 외 모든 증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
주식분산 부진	유동주식비중 20%미만(6월 기준)
변동성 과다	장중 평균주가등락률(절대값) 20bp초과
관리종목, LP지정	관리종목, LP(유동성공급자) 지정(9월말 기준)
고주가	액면가 5천원 & 주가 20만원 초과(9월말 기준)

□ 시장조성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 (제31조의13 및 제31조의15 및 별표 2의3)

- 시장조성자의 자격요건으로 업자에 관한 요건과 시장조성담당자에 관한 요건을 구분하여 명시
 - 업자에 관한 요건 : 자격 정지 또는 시장조성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증권관계법규 및 업무관련규정 위반으로 형사제재를 받거나 과징금, 거래정지 또는 회원제재금(5천만원 이상)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1년 이상 경과할 것
 - 시장조성담당자에 관한 요건 : 최근 1년 이내에 증권관계법규 및 업무관련규정 위반으로 형사제재를 받거나 과징금 또는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적이 없을 것
- 시장조성자 선정시 직전연도 시장조성실적 등을 감안하여 종목 선택 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시장조성자의 수는 시장조성대상종목 및 신청 회원사의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
- 시장조성자가 선택한 바에 따라 종목을 배분하되, 시장조성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조성자와 협의하여 배분방법 변경가능

□ 시장조성호가 제출방법 및 유지의무·의무 면제 등 (제31조의12, 제31조의17, 제31조의18, 제31조의19 및 별지 제2호의4, 제2호의5, 제2호의7 서식)

- 시장조성호가는 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정규시장의 접속매매시간 중에 지정가·최우선지정가호가로만 호가잔량으로 게시되는 방법으로 제출
 - 즉시 체결가능한 호가로 제출시 체결 이후의 잔량만을 시장조성호가로 인정
 - 제출방법을 충족하는 호가(단일가매매의 방법으로 체결된 호가의 경우 제외)의 경우 시장조성호가로서 증권거래세 및 수수료 면제
- 다만, 주가 급락에 따른 위험 관리가 불가피한 종목의 경우 기존 보유수량 이내에서 즉시 체결가능한 호가가격으로 매도 허용
 - ① 관련 파생상품이 없는 종목 & ② 기준가격 대비 4% 이상 낮은 가격 & ③ 전일 순매수잔고의 70% 이내

- 시장조성호가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를 명시하고, 양방향의 시장조성호가 유지 등을 유지의무로 부과하되, 예외적인 경우 일방향호가를 인정
 - 시장조성호가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: ① 장개시후 3분간(Random End 및 VI고려), ② 호가잔량에 상한가의 매수잔량만 존재하거나 하한가의 매도호가잔량만 존재하는 경우, ③ 시장조성호가를 통한 일종 거래대금이 해당종목의 일평균거래대금의 50%를 초과하는 경우, ④ 투자주의·경고·위험종목 지정시, ⑤ 기타 시스템 장애 등으로 시장조성호가 제출이 곤란한 경우
 - 유지의무 : 매도·매수 양방향으로 의무스프레드 이내에서 최소호가유지금액 이상으로 유지할 것 등
 - 예외적인 경우 일방향호가 : 시장조성자가 보유한 포지션이 일방으로 과다하거나 일방의 호가잔량유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그 일방은 면제하고 타방에 대해서만 호가잔량 유지의무를 부과 ① 시장조성계좌의 순매수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.2% 또는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(매수호가 면제), ② 시장조성계좌의 순매수잔고가 최소호가유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(매도호가 면제) 등
- 거래소는 호가의무 면제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계좌에 보유한 대상종목의 일별 순매수잔고를 관리
 - 시장조성개시일 전일까지 최초 보유수량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, 이후 동 수량에 장내·외 순매수수량을 더한 수량을 일별 순매수잔고로 관리

□ 시장조성계약 체결·해지 등 (제31조의16 및 별지 제2호의6 서식)

- 시장조성자는 사전에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
- 시장조성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, 계약 해지 등으로 신규로 계약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계약 효력발생일부터 해당연도 말까지로 함
 - 최초 시행시의 계약기간은 시행일부터 그 해 최종매매거래일까지
- 시장조성계약 종료, 해지 또는 개별종목 시장조성 종료시 각각 종료일·해지의 효력발생일 등까지 시장조성 대상종목의 순매수잔고를 시장조성계좌 이외의 자기매매계좌로 이관하도록 함
 - 다만, 시장조성계약 종료 전 동일한 종목에 대하여 신규로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

□ 시장조성자 평가 및 대가지급 등 (제31조의20부터 제31조의22까지 및 별표 2의4)

-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호가 유지의무 이행 정도, 시장조성활동의 적극성 등에 대하여 분기단위로 평가하여 그 결과 통보

- 평가결과 해당년도 누적벌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조성자격을 정지하며, 시장조성의무를 충족한 종목의 수수료 수입의 범위 내에서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대가를 차등 지급
 - 시장조성의무의 충족 : 일중 의무유지시간이 60%인 조성일수가 전체 시장조성일수의 70% 이상인 경우 등

☐ 시장조성자제도 도입에 따른 기타 관련규정 정비 (제12조 및 제14조)

- 호가의 입력내용 중 계좌의 구분, 시장조성호가의 구분 등 신설
- 시장가호가, 조건부지정가호가, 최유리지정가호가 등을 입력할 수 없는 호가입력의 제한 항목에 시장조성호가 추가

나) 저유동성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 특례

☐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기준 마련 (별표 2의2)

- 저유동성종목 중 체결주기가 600초(10분)를 초과하는 종목을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저유동성종목(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)으로 선정
 - 다만, 평가대상기간부터 적용기간의 최초거래일 이전까지 주식분할을 실시하였거나 LP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배제
- 적용기간 이후 주식분할을 실시하였거나 LP계약을 체결한 종목의 경우 그 다음 월부터 대상종목에서 해제하며, LP계약이 해지·종료된 종목의 경우 그 다음 월부터 대상종목으로 추가 지정

☐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 (제56조의3)

-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의 정규시장에서의 매매계약체결방법을 10분 단위의 단일가매매로 함

나.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²⁾ (2016/3/25 개정, 2016/3/28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☐ 주식시장의 유동성 제고를 위하여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자제도를 도입하고, 유동성이 극도로 부진한 종목에 대해 정규시장 단일가매매를 적용하고자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

2) 제28조의5, 제28조의7 및 별표5 제3항의 개정규정은 전산프로그램 개발 소요기간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따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

2) 주요 내용

가) 저유동성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자제도 도입

□ 시장조성대상종목 선정 및 배제기준 등 (제12조의12 및 별표 5)

— 시장조성자 적용대상이 되는 저유동성종목 선정에 위한 유동성 평가방법 및 선정·배제기준 마련

• 유동성 평가방법

- ① 평가대상종목 : 주권 및 DR
- ② 평가대상기간(전년도 10월~해당연도 9월까지), 적용기간(다음해 1년간)

• 선정·배제기준

- ① 선정기준 : 일평균거래량(5만주 미만 또는 하위 50%), 유효스프레드(3tick 초과 또는 하위 50%), 체결주기(10분이내)
- ② 배제기준

배제기준	세부내용
기타 증권그룹	상장규정상 보통주식 외 모든 증권 및 외국주식예탁증권
주식분산 부진	유동주식비중 20%미만(6월 기준)
변동성 과다	장중 평균주가등락률(절대값) 20bp초과
관리종목, LP지정 등	관리종목, 투자주의 환기종목, LP(유동성공급자) 지정(9월말 기준)
고주가	액면가 5천원 & 주가 20만원 초과(9월말 기준)

□ 시장조성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 (제12조의11, 제12조의13 및 별표 5의2, 업무서식 6의4)

— 시장조성자의 자격요건으로 업자에 관한 요건과 시장조성담당자에 관한 요건을 구분하여 명시

- 업자에 관한 요건 : 자격 정지 또는 시장조성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증권관계법규 및 업무관련규정 위반으로 형사제재를 받거나 과징금, 거래정지 또는 회원제재금(5천만원 이상)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 1년 이상 경과할 것
- 시장조성담당자에 관한 요건 : 최근 1년 이내에 증권관계법규 및 업무관련규정 위반으로 형사제재를 받거나 과징금 및 정직이상의 처분을 받은 적이 없을 것

— 시장조성자 선정시 직전연도 시장조성실적 등을 감안하여 종목선택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시장조성자의 수는 시장조성대상종목 및 신청 회원사의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

— 시장조성자가 선택한 바에 따라 종목을 배분하되, 시장조성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조성자와 협의하여 배분방법 변경가능

□ 시장조성호가 제출방법 및 유지의무·의무 면제 등 (제12조의10 및 제12조의15부터 제12조의17까지 및 업무서식 6의3·6의6)

- 시장조성호가는 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정규시장의 접속매매시간 중에 지정가·최우선지정가호가로만 호가잔량으로 게시되는 방법으로 제출
 - 즉시 체결가능한 호가로 제출시 체결 이후의 잔량만을 시장조성호가로 인정
 - 제출방법을 충족하는 호가(단일가매매시간대 체결된 호가의 경우 제외)만을 시장조성호가로서 증권거래세 및 수수료 면제 적용
- 다만, 주가 급락에 따른 위험 관리가 불가피한 종목의 경우 기존 보유수량 이내에서 즉시 체결가능한 호가가격으로 매도 허용
 - ① 관련 파생상품이 없는 종목 & ② 기준가격 대비 4% 이상 낮은 가격 & ③ 전일 순매수잔고의 70% 이내
- 시장조성호가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를 명시하고, 양방향의 시장조성호가 유지 등을 유지의무로 부과하되, 예외적인 경우 일방향호가를 인정
 - 시장조성호가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 : ① 장개시후 3분간(Random End 및 VI고려), ② 호가잔량에 상한가의 매수잔량만 존재하거나 하한가의 매도호가잔량만 존재하는 경우, ③ 시장조성호가를 통한 일종거래대금이 해당종목의 일평균거래대금의 50%를 초과하는 경우, ④ 투자주의·경고·위험종목 지정시, ⑤ 기타 시스템 장애 등으로 시장조성호가 제출이 곤란한 경우
 - 유지의무 : 매도·매수 양방향으로 의무스프레드 이내에서 최소호가유지금액 이상으로 유지할 것 등
 - 예외적인 경우 일방향호가 : 시장조성자가 보유한 포지션이 일방으로 과다하거나 일방의 호가잔량유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그 일방은 면제하고 타방에 대해서만 호가잔량 유지의무를 부과 ① 시장조성계좌의 순매수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.2% 또는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(매수호가 면제), ② 시장조성계좌의 순매수잔고가 최소호가유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(매도호가 면제) 등
- 거래소는 호가의무 면제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계좌에 보유한 대상종목의 일별 순매수잔고를 관리
 - 시장조성개시일까지 최초 보유수량을 거래소에 신고하여야 하며, 이후 동 수량에 장내·외 순매수수량을 더한 수량을 일별 순매수잔고로 관리

□ 시장조성계약 체결·해지 등 (제12조의14 및 업무서식 6의5)

- 시장조성자는 사전에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하여야 함

- 시장조성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, 계약 해지 등으로 신규로 계약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계약 효력발생일부터 해당연도 말까지로 함
 - 최초 시행시의 계약기간은 시행일부터 그 해 최종매매거래일까지
- 시장조성계약 종료, 해지 또는 개별종목 시장조성 종료시 각각 종료일·해지의 효력발생일 등까지 시장조성 대상종목의 순매수잔고를 시장조성계좌 이외의 자기매매계좌로 이관하도록 함
 - 다만, 시장조성계약 종료 전 동일한 종목에 대하여 신규로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

□ 시장조성자 평가 및 대가지급 등 (제12조의18~제12조의20 및 별표 5의3)

-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호가 유지의무 이행 정도, 시장조성활동의 적극성 등에 대하여 분기단위로 평가 및 결과 공표
- 평가결과 해당연도 누적벌점이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조성자의 자격을 정지하며, 시장조성의무를 충족한 종목의 수수료 수입의 범위 내에서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대가 차등 지급
 - 일중 의무유지시간이 60%인 조성일수가 전제 시장조성일수의 70%이상인 경우

□ 시장조성자제도 도입에 따른 기타 관련규정 정비 (제7조 및 제8조)

- 호가의 입력내용 중 계좌의 구분, 시장조성호가의 구분 등 신설
- 시장가호가, 조건부지정가호가 또는 최유리지정가호가 등을 입력할 수 없는 호가입력의 제한 항목에 시장조성호가 추가

나) 저유동성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 특례

□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 선정기준 마련 (별표 5)

- 저유동성종목 중 체결주기가 600초(10분)를 초과하는 종목을 매매계약체결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저유동성종목(이하 “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”)으로 선정
 - 다만, 평가대상기간부터 적용기간의 최초 거래일 이전까지 주식분할을 실시하였거나 LP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종목의 경우에는 배제
- 대상종목 선정 이후 주식분할을 실시하였거나 LP계약을 체결한 종목의 경우 그 다음 월부터 대상종목에서 해제하며, LP계약이 해지·종료된 종목의 경우 그 다음 월부터 대상종목으로 추가 지정



☐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의 매매계약체결방법 (제28조의7)

— 단일가매매대상 저유동성종목의 정규시장에서의 매매계약체결방법을 10분 단위의 단일가매매로 함

다.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(2016/3/21 개정, 2016/3/28 시행)

1) 개정 이유

☐ 섹터지수선물을 추가로 상장하고 협의대량거래 제도를 개선하는 등 투자자의 거래 편의성 및 파생상품시장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함

2) 주요 내용

☐ 섹터지수선물 추가 상장 및 제도 개선 (제4조의8, 제67조의4, 별표 1의2, 별표 6 및 별표 19)

— 투자자에게 위험관리수단을 추가로 제공하고 거래의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섹터지수선물을 추가로 상장하고 거래승수 등 일부 제도를 개선

- 코스피200 건설, 코스피200 중공업, 코스피200 헬스케어의 3개 기초자산을 추가 상장(추가 상장 이후 섹터지수선물의 기초자산은 총 9개(기존 6개 + 추가 3개))
- 정밀한 헤지거래 및 투자자의 거래비용 감소를 위하여 거래승수를 5만에서 1만으로, 호가가격단위를 0.50P에서 0.20P로 축소함(섹터지수선물 중 배당지수선물은 기존(0.50P) 유지)
- 투자자의 거래 편의를 위하여 섹터지수선물에 협의대량거래 제도를 도입

□ 주식상품거래의 협의대량거래 제도 개선 (제68조 등)

— 대량 롤오버의 편의성 및 장외수요의 장내화를 제고하기 위하여 주식상품거래의 협의대량거래 제도를 개선

구분	기존	개정	비고
신청시간	정규거래의 개시 후 5분부터 종가 단일가시간의 개시 전까지의 시간 중 단일가호가시간을 제외한 시간	단일가호가시간을 포함한 정규거래시간	제68조
가격범위	협의대량기준가격 $\pm$ 협의대량가격제한폭* 범위 이내 * 코스피200선물의 경우 0.5% 등	협약이 완료된 시점의 시장가격상황 및 거래 규모 등을 고려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	제69조
신청수량	상품별 최소 20계약 이상 * 최대수량은 상품별로 상이	최소 1계약 이상 * 최근월종목은 현행 최소수량 유지	제70조
신청시한	협약이 완료된 시각부터 10분 이내	직전거래일의 장종료시점 이후부터 당일 장종료시점까지 협약된 거래에 대하여 당일 정규거래시간 이내 * 신청이 협약 완료 후 1시간 이상 지체되는 경우 그 지체사유를 기록·보관	제71조

□ 코스닥주식선물 호가가격단위 변경 (제10조의2)

— 현·선 연계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코스닥주식선물의 호가가격단위를 코스닥시장과 일치하도록 변경

구분	코스닥주식선물 호가가격단위		일치(=)	코스닥주식선물 호가가격단위
	(기존)	(개정)		
① 1천원 미만	10원	1원		1원
② 1천원 이상 ~ 5천원 미만		5원		5원
③ 5천원 이상 ~ 1만원 미만		10원		10원
④ 1만원 이상 ~ 5만원 미만	50원	50원		50원
⑤ 5만원 이상 ~ 10만원 미만	100원	100원		100원
⑥ 10만원 이상 ~ 50만원 미만	500원			
⑦ 50만원 이상 ~	1,000원			

□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를 위한 기초자산 환산비율 등 설정 (제83조, 제90조의3 및 별표 27)

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등 법령 개정으로 주가지수파생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의 증권거래세 면제가 도입됨에 따라 주가지수파생상품의 기초자산 환산비율, 지수반영 시가총액 비중 등을 정함

□ 옵션가격변동거래증거금액 산출방식 변경 (별표 18)

- 옵션가격변동거래증거금액을 산출하는 경우 종목별로 산출하는 방식에서 원지수와 미니상품 간의 증거금이 상쇄될 수 있도록 종목군별 산출 방식으로 변경함
 - 종목군은 거래승수를 제외한 종목 구성요소가 같은 종목의 집합을 의미(선물거래의 경우에는 기초자산 및 최종거래일이 동일한 종목의 집합을, 옵션거래의 경우에는 기초자산, 옵션유형, 행사가격 및 최종거래일이 동일한 종목의 집합)
 - 옵션가격변동위탁증거금액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(부칙 제5조 제2항)

라.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³⁾ (2016/3/23 개정, 2016/3/28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「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급등에 대한 시장관리방안」(2016/3/22)에 따라, 유통주식수가 부족한 종목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관련 내용을 반영함

2) 주요 내용

- 매매거래정지 및 해제 사유 구체화 (제18조 제1항, 제29조 제1항)
- 대규모 감자 등으로 인한 주식수 감소로 i) 유통주식수가 보통주식수 대비 일정수준에 미달되거나 또는 ii) 유통주식수가 현저히 적을 경우 매매거래 정지
 - 매매거래 정지 : 최소 유통주식비율은 보통주식총수 2%, 최소 유통주식수는 10만주
 - 매매거래 정지 해제 : 최소 유통주식비율은 보통주식총수 5%, 최소 유통주식수는 30만주

마.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개정 (2016/3/29 개정, 2016/3/30 시행)

1) 개정 이유

- 투자위험종목 지정 기준을 추가하여 단기이상급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장경보제도를 개선함

3) 제18조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자본감소, 액면병합 등 자본증감 사유로 변경(추가)상장하는 법인부터 적용



2) 주요 내용

☐ 투자위험종목 지정 기준 신설 (제3조의4)

-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5일 60%, 15일 100% 이상 상승시 투자위험종목 지정 기준 외에 3일 45% 이상 상승시 지정기준을 신설

바. 회원관리규정 시행세칙 개정 (2016/3/3 개정, 2016/3/3 시행)

1) 개정이유

- ☐ 자기자본 요건에 따른 회원조치 기준을 차등화하여 회원 재무요건과 회원조치 기준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, 중복되는 회원조치 기준 정비 및 회원조치 유예 대상을 확대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함

2) 주요 내용

☐ 자기자본 미달에 따른 회원조치 기준 변경 (별표 제1호)

- 금액 기준에서 비율 기준으로 변경

☐ 재무요건 미달 회원조치 유예적용 대상 확대 (별표 제2호)

연구원 신경희(02-3771-0854, skh0828@kcmi.re.kr)